



노스 캐롤라이나 주
평가 위원회

다음 주제에 관하여:

고위 당국 결정 번호.

수신:

원고

고용주

N.C.Gen.Stat. §96-15(e) 에서, 이 원인은 항소 사건표 번호. . 의 항소 심판 결정에 따른 **(원고의) (고용주의) 항소**를 검토하기 위해 평가 위원회 (“Board”)에 제출되었습니다. 기록 증거가 완전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원고)(고용주)는 (그의)(그녀의)(그것의) 항소에서 (그가)(그녀가)(그것이) (예정된 청문회의 통지를 못) (청문회가 열린 날짜 이후에 예정된 청문회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고용주)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원고)(고용주)가 (그의)(그녀의)(그것의) 청문회 불참석에 대한 원인으로 04 N.C. Admin. Code 24A .0105(26) 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정당한 원인은 실사를 실시할 때 법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충족되는 사유이어야만 합니다. “실사”란 특정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행하도록 기대되고 행해지는 조심성, 예방, 주의, 그리고 올바른 판단의 척도를 의미합니다. N.C. Admin. Code 24A .0105(21). 앞서 언급된 바에 따라, 원인은 **새로운 청문회**를 열기 위해 항소 심판에 송환되어야 합니다.

상고 청문회가 끝나면 항소 심판은 기존의 결정을 내려놓고, 새로이 찾은 사실 및 법적 결론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실 조사 결과에는 모든 이행 및 재착수의 순서, 재착수 사유, 재착수 명령의 요구 사항 요약, 그리고 이 문제에서 진행된 각 청문회에 참석한 당사자들과 증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절차적 이력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원인은 이 결정에 부합하는 추후 절차를 위하여 **송환**됩니다.

중요 - 다음 장을 보십시오



모든 이해 당사자는 심의회의 장소와 시간에 대해 정식으로 통고되어야 하며, 항소 심판은 이전에 할당된 모든 사건표 번호를 사용하여 청문회가 끝날 때에 새로운 결정을 식별해야 할 것이 명령됩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항소 부서에 전달 된 반송 기록의 모든 문서는 전시물로 표시되고 법으로 요구되는 대로 기록을 완성하기 위하여 항소 심판이 기록에 입력하도록 청문회 통지와 함께 항소 심판에게 전달 될 것 역시 명령됩니다.

평가 위원회의 위원 Fred F. Steen 와 Stan Campbell 이 항소에 참여하여 이 결정에 동의합니다.

이.

평가 위원회

의장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

04 N.C. Admin. Code 24A .0105(32) (고용주의 실업 보험 관리자로 일하는 제 3자의 개인 포함)에 정의된 법정 대리인은 면허가 있는 변호사이거나 N.C. Gen. Stat. Ch. 84 및 § 96-17(b). 에 따라 면허가 있는 변호사가 감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변호사 감독의 통지 및 / 또는 증명은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 절차의 법적 대리는 N.C. Gen. Stat. Ch. 84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의거하여, 당사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발송됩니다.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 되는 모든 정보는 당사자에게 직접 발송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영향을 가집니다.

2013 년 6 월 30 일 이후에 제기 된 클레임의 경우, 원고는 이후 항소에서 취소된 행정 또는 사법 결정에서 수령된 급여의 상환 대상이 됩니다. N.C. Gen. Stat. § 96-18(g)(2).

항소 제기:

결정 전달: